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1940
----------	------

2020.11.26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0. 16. 정진술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-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0.11.26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정진술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’ 권고 의결(’20. 9. 7.)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·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.

- 이에 대관료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(안 제11조제4항 신설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’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건축전시관(이하, 전시관)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대관료)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11조(대관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</u> <u>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</u> <u>2.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</u>

	<p><u>대관료 전액 반환</u></p> <p>3. <u>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</u></p> <p>4. <u>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</u></p>
--	---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·불편 요인 제거를 위한 일환으로,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계약보증금 포함 선납액 전부를 반환하되, 필요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은 총액 10%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등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(‘20.9., 검토보고서 붙임1),
-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행 ‘서울도시건축전시관 시설물 대관 규정’(이하, 전시관 대관 규정, 검토보고서 붙임2)을 참고하여 전시관 대관료 반환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됨.
- 전시관 대관 규정을 살펴보면,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 반환, 50% 반환, 반환 불가 등 차등 반환을 적용하고 있으나, 사용일 이후의(이틀 이상 대관할 경우) 반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, 이 조례에서(제11조제1항) ‘사용일 10일 전까지’ 대관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‘대관 계약일 이후 5일 이내’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, 이 조례를 개정하여 대관료 반환규정을 명시하고, 이 조례에 따라 전시

관 대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	전시관 시설물 대관 규정	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		
		현행	개정안	집행부 수정안
대관료 납부 기한	대관 계약일 이후 5일 이내	사용일 10일 전까지	-	사용일 5일 전까지
100% 반환	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에 의한 취소, 대관 개시일 5일 이전까지 취소	-	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에 의한 취소, 사용일 4일 전까지 취 소	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에 의한 취소
일부 반환	50% 반환 : 대관 개시일 2일 이전 까지 취소	-	대관료의 100분의 10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: 사용일 전까지 취소	개정안과 동일
			대관료의 100분의 10 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 반환 : 사용일 이후 취소	개정안과 동일
반환 불가	대관 개시일로부터 1일 남은 시점 이후 취소	-	-	-
비고		<p>‘이전’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법률상 기간계산 관 련 용어를 사용 시 ‘0일 전’과 같은 용례가 다수이므로 조문 구성 시 이러한 용례를 따름(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)</p> <p>The diagram shows a horizontal timeline from day 6 to day 1. Above the timeline, arrows indicate periods: ⑥ (days 6-5), ⑤ (days 5-4), ④ (days 4-3), ③ (days 3-2), ② (days 2-1), and ① (day 1). Below the timeline, the days are labeled: 6일, 5일, 4일, 3일, 2일, 1일. A bracket under day 1 is labeled '대관개시일 (사용일)'. A bracket under days 1 and 2 is labeled '초일 불산입'.</p>		

○ 다만, 집행부에서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고 대관료 반환은 사용일 전과 사용일 후로 이원화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,

대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신, 반환 구간을 간소화하여 분쟁 및 착오의 여지를 축소하려는 것으로서, 이 조례 개정예 집행부 안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.

- 참고로, 전시관 시설 중 아카이브만 대관을 하고 있고, 전시관 개관 이후('19.3.) 대관료 반환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(현재까지 대관 건수 : 서울시 84건, 외부 10건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1940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0.11.26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료 납부기한 및 위약금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되,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 납부를 가능토록 한 단서를 삭제하고(안 제11조제1항),
-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의 반환 규정을 삭제하며,
-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(안 제11조제4항제2호),
-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의 반환 규정은 삭제함.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안 제11조제4항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“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”으로 한다.

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2.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2.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